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을숙도문화회관의 신설에 따라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사용 조항 신설
- 용어의 정의에 맞게 「소속행정기관장」을 「직속행정기관장」으로 변경
- 추후 민원발급에 대비하여 직속행정기관장,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란 신설

2. 주요내용

- 사업소의 장의 공인 비치 사용 조항 신설(제1조, 제2조 제1항, 제6조 제2항)
- 직속행정기관장으로 용어 변경(제1조, 제2조 제1항 내지 제2항, 제2조 제7항, 제6조 제2항)
- 직속행정기관장, 사업소장의 민원실전용 공인 비치 조항 신설(제2조 제3항)
- 사업소의 공인관수자 지정(제13조 제1항)

3. 관련법령 및 조례

- 지방자치법제104조(직속기관)
- 지방자치법제105조(사업소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조(정의)
- 사무관리규정 제35조(종류및비치), 제36조(특수관인), 제41조(공인)
- 사하구 공인조례 1조(목적), 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, 제6조(공인의 신조개각), 제13조(공인의 관수자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의 용어 정의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
- 을숙도문화회관 직제 신설에 따른 사업소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또한 직속행정기관장(보건소장)과 사업소장(문화회관장)이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처리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 하였으나
- 개정요구 조례안 제2조 제3항 내용중 민원실 전용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경우에는 구청장 직인은 “민원실 전용” 으로 직속 행정기관장, 사업소장, 동장직인은 “민원사무 전용”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여야만 사하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“별표2” 의 내용과 부합될 것으로 보이며
- 공인조례 제4조2항 내용중 “별표1” 공인의 규격에 있어서 1항 나호의 “동장, 소속행정기관장” 을 “직속행정기관장, 동장” 으로 수정하고
- 공인조례제15조 제3항 내용중 “구청장, 동장, 소속행정기관장, 사업소장” 을 “구청장, 직속행정기관장, 사업소장, 동장” 으로 수정하여야만 개정요구 조례안 내용과 일치될 것으로 판단됨.

2002. 7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림